

『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
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0년 10월 28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0년 10월 28일

라. 상정일자 : 2010년 11월 5일

제15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

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주민생활지원국장 전 희 영

나. 제안이유

-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민지원기금관리 운영 시 나타난 일부
미비점을 보완하고,
- 폐기물 처리시설의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
위함.

다. 주요내용

-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민지원기금관리를 위한 간사 및 기금출납원 변경
 - 주민지원기금관리를 위한 간사 및 기금출납원을 현행 환경시설관리담당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으로 변경하여 기금관리를 소관별 업무담당이 관리하도록 개정
-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

라. 참고사항

-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김 교 역

- 본 조례개정안은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·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,
-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을 종전 예산편성 지침상 “일용인부임 단가”에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문 생산직 직종별 평균조사노임 보통인부 단가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도록 하여 수당단가를 현실화 하고,
- 쓰레기처리시설의 주민지원기금관리가 현행 구포쓰레기 매립장의 업무담당인 환경시설담당으로 되어 있으나, 2011년 환경자원화 시설의 구성에 따른 주민지원기금 관리자는 환경관리센터구성 담당이 관리하게 함으로써 담당주체가 2개 담당으로 확대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이 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